(2023.1.1.~)

재외국민 공동인증서 발급 신청 서식

제출 서류 안내

1. 인증서비스 신청서 : [별지 1호 서식] 작성

2. 여권 사본(인적사항란 반드시 포함)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3.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한국전자인증 선택 시 [별지 3-1호 서식] 및 [별지 3-2호 서식] 작성
   - 한국정보인증 선택 시 [별지 4-1호 서식] 및 [별지 4-2호 서식] 작성

4.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별지 2호 서식] 작성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과 반드시 동행
   - 주민등록등본 등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 1부와 법정대리인의 여권 사본 1부 첨부

[별지 제1호 서식]

인증서비스 신청서

☐ 신규
☐ 재발급

* 1.~ 7. 항목의 부분을 빈칸 없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 성 명	(한글) (영문) * 여권상의 한글명 및 영문명 작성
2. 주민등록번호	
3. 이 메 일	
4. 전 화	(집/직장) * 거주지 주소 기입(유의사항 4 참고)
5. 주 소 (한글 또는 영문)	* 거주지 전화번호 기입(유의사항 4 참고)
6. 공동인증서 발급 희망 기관 ※ 우측 2개 중 하나만 선택	☐ 한국전자인증㈜ CrossCert ☐ 한국정보인증㈜ SignGate
재외공관 확인 ※신청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재외공관(영사) (서 명)

7. 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각 기관의 인증업무준칙에 따라 상기와 같이 인증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_____ (서명 / 날인)

☐ 제출서류
- 인증서서비스 신청서 1부
- 여권사본 1부(인적사항란 포함), 여권은 지참하여 방문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인증서 발급 법정대리인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등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 1부 및 법정대리인의 여권 사본 1부

※ 유의 사항

1. 대리인 방문 시 공동인증서 발급 신청 및 접수가 불가합니다.
2. 신청인의 여권을 지참하지 않고 방문 시, 발급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향후 공동인증서 긴급 폐지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이용되므로 거주지 주소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 받은자(예 : 타인의 여권으로 인증서 발급을 받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인증서 발급 법정대리인 동의서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본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 항목을 빈칸 없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서 발급 신청인	이 름	
법정대리인	신청인과의 관계	□ 부 □ 모 □ 기타 ( )
	이 름	
	전 화	* 거주지 전화번호 기입(유의사항 3 참고)

법정 대리인 본인은 상기 신청인의 인증서비스 신청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 0 년 월 일

법정대리인 이름 _____ (서명 / 날인)

□ 인증서 발급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시 첨부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 1부
- 법정대리인의 여권 사본 1부

※ 유의 사항

1.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법정대리인만 방문 시 인증서 발급 신청 및 접수가 불가합니다.
2.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법정대리인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원본),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지 않고 방문 시, 발급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향후 인증서 긴급 폐지 시, 본인확인을 위해 이용되므로 거주지 주소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1호 서식] 한국전자인증의 인증서비스 이용 약관 등

공동인증서비스 이용 약관

제1조 (목적 및 적용 범위)
본 약관은 전자서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전자서명관련법" 이라 한다)과 한국전자인증주식회사(이하 "한국전자인증"이라 한다)의 인증업무준칙에 의하여 제공하는 인증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서명생성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검증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3. "인증"이라 함은 전자서명 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인증서"라 함은 한국전자인증이 발급하는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5. "등록대행기관"이라 함은 한국전자인증으로부터 인증서비스 가입신청서의 접수/처리 및 신원확인 등 가입자 등록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6. "가입자"라 함은 한국전자인증으로부터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인증 받은 자를 말한다.
7. "이용자"라 함은 한국전자인증이 발급한 인증서를 이용하여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와 전자서명검증정보의 합치성을 확인하려는 자를 말한다.
8. "가입자 정보"라 함은 가입자에 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가입자를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가입자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9. 사고정보: 전자금융사고 또는 공동인증서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가입자의 기기정보 및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를 말한다.

제3조 (약관 명시 및 개정)
① 본 약관은 인증서비스 가입 신청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한국전자인증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 일자 2주전에 이를 고지한다.
③ 가입자가 변경된 약관이 고지된 후 2주 이내에 서면 또는 전화, 전자메일의 수단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본 약관의 공지는 한국전자인증 웹사이트(https://www.crosscert.com)홈페이지상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며, 약관 변경의 고지는 전단과 동일한 방법 또는 전자메일의 수단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4조 (약관 외의 규정)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서명관련법 및 전자상거래등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 2 장 인증서의 신청 및 발급

제5조 (인증서비스의 종류 및 인증수수료)
① 한국전자인증은 인증서의 신규발급, 재발급, 갱신발급, 효력정지, 효력회복 및 폐지 등의 인증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한국전자인증에서 제공하는 인증서 종류와 용도, 인증수수료 등은 한국전자인증의 홈페이지(https://www.crosscert.com)에 게시한다.
③ 제5조 2항의 인증수수료는 인증서비스 가입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전자인증이 무료발급을 명시하거나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제6조(인증서비스 가입신청)
① 인증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가입신청자"라 한다)는 한국전자인증 또는 가까운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인증서비스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신원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신청을 받은 한국전자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될 경우, 가입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
2. 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3. 제출된 서류만으로 가입신청자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4. 납부할 인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사고정보를 이용하여 발급 신청하였거나 사고정보로 의심되는 경우
6. 기타 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공동인증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③ 한국전자인증과 등록대행기관은 전자서명관련법에 근거하여 가입신청자의 신원확인 및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 후 인증서 발급코드를 제공한다.
④ 가입신청자는 인증서 발급 안내를 숙지하여 인증서를 신청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한국전자인증의 웹사이트(https://www.crosscert.com)에 접속하여 인증서 발급코드를 입력 후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⑤ 가입신청자가 가입신청 후 인증서 발급가능기간 내에 인증서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서 발급가능기간의 초과와 동시에 인증서 서비스 가입신청이 취소된다.

제7조 (인증수수료의 환불)
① 가입신청자가 인증서를 발급가능기간 내에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급가능기간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인증서를 발급 받았을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래 발급신청을 하였던 한국전자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발급의 취소를 신청하고, 인증수수료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국전자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인증서 발급신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 3 장 인증서의 효력 등

제8조 (인증서의 유효기간)
① 한국전자인증이 발급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한국전자인증의 홈페이지(https://www.crosscert.com)에 게시한다.

제9조 (인증서의 이용범위)
한국전자인증은 개인과 법인/단체/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공동인증서를 발행하며, 공동인증서의 이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법인/단체/개인사업자(범용): 일반 전자상거래, 금융기관 업무, 정부전자조달/민원업무,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민원업무
2. 법인/단체/개인사업자(용도제한용): 전자계약 업무, 전자세금계산서 업무, 은행, 보험 및 신용카드 업무, 원산지 증명 업무, 조달 비축물자 업무
3. 개인(범용): 일반 전자상거래, 금융기관 업무, 정부 민원업무
4. 개인(용도제한용): 은행, 보험 및 신용카드 업무, 정부 민원업무, EMR 전자서명 업무, 내부 업무용
5. 서버(범용): 온라인상 서버를 통해 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업무

제10조 (인증서의 효력의 소멸 등)
① 한국전자인증이 발급한 인증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효력이 소멸된다.
1.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2. 본 약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3. 본 약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제11조 (인증서의 효력정지 등)
① 한국전자인증은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의 효력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한다.
② 효력이 정지된 인증서는 효력이 정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인증서 효력회복 신청이 있으면 그 효력을 회복한다.
③ 한국전자인증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효력을 회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ldap://dir.crosscert.com에 이를 공지한다.

제12조 (인증서의 폐지 등)
① 인증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인증서를 폐지한다.
1.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2. 가입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3. 가입자의 인증서가 사고정보를 이용하여 발급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4. 가입자의 사망/실종선고 또는 해산사실을 인지한 경우
5.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6.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효력이 정지된 인증서에 대한 효력회복신청이

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없는 경우
7. 한국전자인증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유출된 경우
② 한국전자인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ldap://dir.crosscert.com에 이를 공지한다.

제13조 (인증서비스의 정지 및 인증서의 이용제한 등)

① 한국전자인증이 제공하는 인증서비스는 연중 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증서비스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 등의 필요가 있어 부득이한 경우
2.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인증서비스와 관련한 보안상의 이유로 인증서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전자서명관련법에 의한 인증서비스의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기타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13조 1항에 따라 인증서비스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경우 한국전자인증은 지체 없이 가입자에게 이를 고지한다.
③ 한국전자인증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증서 이용을 일부 혹은 전부 제한할 수 있다.
1. 가입자의 사망, 실종, 구속 등으로 신원확인이나 전자거래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2. 법정대리인을 통한 신고 및 동의 없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가입한 경우
3. 법인가입자가 사업자로서 자격을 상실하거나, 부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4.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5. 전자서명관련법에 의한 인증서비스의 중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 가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한국전자인증이 인지한 경우
7. 가입자의 인증서가 부정하게 사용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8. 한국전자인증이 인증서비스와 관련한 보안절차나 한국전자인증의 전자서명생성정보 유출과 같은 보안상의 이유로 기 발급된 인증서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9. 용도제한용 인증서를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10. 테스트를 위해 발급된 인증서를 테스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테스트가 완료된 경우
11. 기타 인증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4조 (한국전자인증의 의무)

① 한국전자인증은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는 경우에도 당해 가입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한국전자인증은 가입자의 인증서와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당해 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관리한다.
③ 한국전자인증은 인증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당해 인증서의 기재사항 또는 인증서와 결부된 정보가 정확하고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한국전자인증은 인증업무준칙의 제•개정 내용 및 기타 인증업무 수행 관련 정보 등을 지체 없이 공지해야 한다.

제15조 (가입자의 의무)

① 가입자는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등을 이용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자신의 전자서명정보를 생성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인증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수집에 실명을 포함한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인증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당해 인증서의 기재사항 또는 인증서와 결부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가입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이를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한국전자인증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한국전자인증에 통보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가입자 개인정보보호

제16조 (가입자 개인정보보호)

① 한국전자인증은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정당한 수단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② 한국전자인증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전자인증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이 가입자의 개인정보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한국전자인증은 가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④ 한국전자인증은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서비스 운영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이러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전자인증이 선정한 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의 처리 및 관리,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지한다.
⑤ 가입자가 개인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가입자가 이러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인증서비스는 정지된다.

제 5 장 손해 배상

제17조 (손해배상)

한국전자인증이 인증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한국전자인증이 경과실에 의하여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 한국전자인증이 가입한 보험의 배상한도 내에서만 배상할 수 있다.

제18조 (면책)

한국전자인증과 등록대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가입자 및 이용자가 용도에 합치하지 않은 인증서를 사용한 경우
2. 인증서비스 수행 중 한국전자인증의 시스템 장애가 아닌 통신경로상의 장애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및 등록대행기관 외부의 통신기기 및 통신회선의 장애에 의한 업무처리의 지연이나 불능일 경우
3. 가입자 또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가입자의 전자서명 생성정보 관리 부주의(정보 노출, 분실, 변조 등)로 발생한 손해
5. 가입자가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정보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변경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6. 유효기간이 경과된 인증서의 이용에 따른 손해
7. 전자서명관련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
8. 효력정지 및 폐지된 인증서의 이용에 따른 손해
9. 한국전자인증이 제공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인증서비스의 지연 및 중단에 의한 가입자 및 이용자의 손해
10. 법적인 효력이 없는 시험용 인증서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11. 기타 한국전자인증 및 등록대행기관의 과오로 인한 사고가 아닌 경우

제19조 (재판권 및 준거법)

① 한국전자인증 인증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② 한국전자인증과 가입자 또는 이용자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국내법을 적용한다.

제20조 (경과규정)

본 약관 시행 전 발급된 인증서에 대하여는 종전의 약관 규정을 따르며, 종전의 약관 규정은 한국전자인증의 홈페이지(https://crosscer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전자인증(주)의 인증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별지 제3-2호 서식]

한국전자인증(주)는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고지하오니, 인증서를 이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이메일, 전화, 주소, 신분증 사본 (자동생성 정보 : 접속로그, 쿠키, 접속IP정보)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인증서 발급 및 관리 - 인증서 부정발급 및 부정사용 모니터링 -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일 안내 (갱신 안내)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가입자의 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날로부터 5년간 보관 (자동생성 정보 3개월 보관)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가입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인증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성명 _____ (서명)	□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사본에 포함된 고유식별정보 □ 고유식별정보 수집 목적 - 인증서 발급 시 본인 확인 □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가입자의 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날로부터 5년간 보관 ※ 수집 근거 :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가입자는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인증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성명 _____ (서명)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에 각각 서명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1호 서식] 한국정보인증의 인증서비스 이용 약관 등

인증서비스 이용 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인증서비스 이용약관 (이하"약관"이라 합니다) 은 전자서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고시(이하 "전자서명법령 등"이라 합니다) 및 한국정보인증주식회사 (이하 "한국정보인증"이라 합니다)의 인증업무준칙에 의거 가입자가 인증서를 이용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한국정보인증"의 인증업무준칙 (이하 "인증업무준칙"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전자서명법령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한국정보인증이 제공하는 인증서비스와 관련한 제반 운영 사항을 말합니다.

②"등록대행기관"이라 함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신청의 접수·처리 등 가입자등록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가입자"라 함은 한국정보인증과의 인증서 이용계약에 의하여 자신의 전자서명검증정보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④"이용자"라 함은 한국정보인증이 발급한 인증서를 신뢰하여 한국정보인증의 인증서 소지자와 거래하는 당사자를 말합니다.

⑤"사고정보"라 함은 전자금융사고 또는 인증서 유출 등이 발생한 기기정보(IP 및 MAC 주소 등) 및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말합니다.

⑥"단말기 지정"이라 함은 단말기(PC, 스마트폰 등)의 기기정보를 등록대행기관에 등록하고, 인증서 발급 시 가입신청자가 등록한 단말기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⑦"추가인증"이라 함은 휴대폰 SMS인증, 2채널 인증 등과 같이 단말기 지정 이외의 수단으로 가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⑧"2채널 인증"이라 함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경로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⑨기타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전자서명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효력 및 변경]

①본 약관은 한국정보인증의 홈페이지(www.signgate.com)에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한국정보인증은 본 약관을 변경하여야 할 중요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변경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제 1 항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③가입자가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2 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서명 한 전자문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한국정보인증은 가입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4 조 [준용규정]

①인증업무준칙은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며, 가입자 및 가입신청자는 인증업무준칙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본 약관에 동의할 경우 숙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본 약관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서명법령 등' 및 한국정보인증의 인증업무준칙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됩니다.

③한국정보인증은 가입자 및 가입신청자가 '전자서명법령 등' 및 인증업무준칙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정보인증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 2 장 인증서비스의 이용

제 5 조 [인증서비스의 종류]

한국정보인증은 인증서의 신규발급, 재발급, 갱신발급, 효력정지, 효력회복 및 폐지 등의 인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6 조 [인증서의 신청]

인증서의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를 신청합니다.
2. 가입신청자는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시에 선택한 등록대행기관에 방문합니다.
3. 한국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전자서명법령 등'에 근거하여 가입신청자의 신원확인 및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 처리합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를 제공하는 등록대행기관은 안전성 제고를 위해 단말기 지정 또는 추가인증 등을 통해 가입신청자의 신원확인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4. 가입신청자는 인증서 발급 안내를 숙지하여 인증서를 신청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 받습니다. 동 기간 내에 발급 받지 아니할 경우 등록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

제 7 조 [인증서 신청, 발급의 제한]

한국정보인증은 다음의 경우, 인증서의 신청 및 발급을 제한합니다.

1. 타인 명의의 신청
2. 허위 사실의 기재 및 허위서류 첨부
3. 인증서 요금 미납
4. 기술상 문제로 인증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
5. 단말기 지정 또는 추가인증 등에 실패한 경우
6. 사고정보를 이용하여 인증서를 신청 또는 발급받은 경우
7. 기타 가입신청자의 귀책사유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제 8 조 [인증서의 이용 제한]

한국정보인증은 다음 각호의 경우 인증서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가 사망, 구속 등으로 신원확인이나 법적인 전자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2. 법정대리인을 통한 신고 및 동의 없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가입한 경우
3. 법인가입자가 사업자로서 자격을 상실하거나, 부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4.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등 '전자서명법령 등'에 의한 인증서비스의 중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가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한국정보인증이 인지한 경우
6. 가입자의 인증서가 부정하게 사용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7. 한국정보인증이 인증서비스와 관련된 보안절차나 한국정보인증의 전자서명생성정보 유출과 같은 보안상의 이유로 기 발급된 인증서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8.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9. 용도제한용 인증서를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10. 테스트를 위해 발급된 범용 혹은 용도제한용 인증서를 테스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테스트가 완료된 경우
11. 기타 인증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 9 조 [인증서비스의 중단]

한국정보인증은 시스템 정기점검 등 부득이한 경우 인증서비스를 지연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인증서 요금 등

제 10 조 [종류 및 요금]

①한국정보인증에서 제공하는 인증서의 종류와 요금은 한국정보인증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②한국정보인증은 인증서 요금의 선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11 조 [기타 요금 및 정책 변경]

① 한국정보인증은 갱신발급, 재발급, 효력정지, 효력회복 및 폐지 등에 대한 요금을 별도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②한국정보인증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급 요금 외에 실시간 인증서 상태확인 서비스 (OCSP), 시점확인서비스, 기타 인증서 이용 등에 대한 부가서비스 요금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③한국정보인증은 인증서 종류 및 요금 등 인증서관련 정책이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 12 조 [환 불]

①가입자는 인증서를 결제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가입 취소 및 요금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기간이 경과할 경우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고 동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②전자금융거래를 제공하는 등록대행기관은 동조 제1항의 환불기간을 7일로 홈페이지에 공지한 경우, 해당 등록대행기관에서 인증서 요금을 결제한 가입자에 한하여 7일 이내에 가입 취소 및 요금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한국정보인증은 가입자가 인증서비스 가입 취소 및 요금의 환불을 요구 할 경우 필요 경비(송금수수료 등)를 공제한 후 잔액을 지불합니다. 이때, 한국정보인증은 가입자의 인증서를 폐지합니다.

제13조(세금계산서의 발행)

①한국정보인증은 인증서 요금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하거나 출력하여 종이문서의 형태로 보관하여도 기존의 수기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됩니다.

②한국정보인증은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안내메일을 발송하며 가입자는 메일확인 후 안내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운로드 받아 보관합니다. 이때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가입자의 인증서 요금 입금일로 합니다.

③가입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정보인증은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합니다. 단, 작성일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④가입자는 인증서 요금을 입금한 날이 속한 월의 익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발급받지 아니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제 4 장 당사자 의무 등

제 14조 [한국정보인증의 의무]

①인증서비스와 관련한 정보의 정확한 제공 및 공고

②한국정보인증의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③전자서명생성정보의 분실·훼손·도난·유출, 전자서명생성정보의 취약성 및 .

알고리즘 취약성에 대한 통보 및 조치
④디렉토리 서비스 제공
⑤가입신청자 및 가입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자료의 보안유지
⑥"가입자 정보 등"의 보관의무 등 기타 '전자서명법령 등'상에 정해진 의무

제 15 조 [가입자 의무]

①정확한 정보제공
②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및 안전관리
③인증서의 유효기간, 발급기관, 인증서의 종류 및 용도 등의 이상유무 확인
④인증서의 발급 용도(이용범위) 내 사용
⑤인증서 폐지사유 발생시 폐지 신청
⑥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기책임으로 한국정보인증의 면책 보장
⑦기타 '전자서명법령 등' 및 인증업무준칙 상의 의무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인증서비스 가입자와 거래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 당해 인증서의 유효기간, 발급기관, 인증서 종류, 이용범위, 용도, 가입자의 제 3 자를 위한 대리권의 존재 여부 및 직업상의 자격 여부
2. 인증서의 발급 용도(이용범위)에 맞게 사용
3. 인증서의 효력 정지 또는 폐지여부 검증확인
4. 기타 '전자서명법령 등' 및 인증업무준칙 상의 의무

제 5 장 손해배상 및 기타

제 17 조 [손해배상]

①한국정보인증 및 등록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가입자 및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전자서명법령 등' 및 인증업무준칙에 정한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한국정보인증은 가입자 또는 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당해 보험계약에서 정한 배상한도인 연간 20억, 건당 5억의 범위 내에서 가입자 및 이용자의 정당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③가입자 및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 및 제 3 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18 조 [면책]

한국정보인증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1. 인증서의 용도 등을 가입자 또는 이용자가 임의로 변경, 사용하여 발생한 손해
2. 인증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통신경로 장애 또는 가입자 시스템 장애 등 한국정보인증의 귀책사유가 아닌 원인으로 인한 손해
3. 인증업무준칙상의 가입자 및 이용자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4. 인증서비스와 관련 직접적이고 보상적인 손해 이외의 손해
5. '전자서명법령 등' 및 인증업무준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
6. 전자우편용, 시험용 인증서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7. 2채널 인증 수단 중 법무부의 출국정보 조회시 법무부 출입국관리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출입국 정보 반영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손해
8.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9. 기타 한국정보인증의 과실 없이 발생한 손해

제 19 조 [재판관할]

본 약관에 따른 인증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한국정보인증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한국정보인증의 인증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_____ (서명 / 날인)

[별지 제4-2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필수)

한국정보인증은 인증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내용을 관계 법령에 따라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보인증이 수집하는 정보는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정보로써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없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한국정보인증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수집 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1. 서비스의 제공
인증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인증서 유지·관리,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부가서비스 이용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결제 및 정산
정보주체가 신청한 인증서비스의 발급 비용의 결제, 거래의 취소 또는 환불, 영수증 발행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 인증서 효력정지, 긴급폐지 등을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한국정보인증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이용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 합니다. 단, 관련 법령 또는 정보주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당사 정책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률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3년
상법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 서류	10년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	5년

당사 이용약관	인증서 비용을 결제하지 않은 신청 정보	30일

*단, 별도의 개인정보 유효기간 설정 시 해당 기간까지 보유합니다.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한국정보인증은 각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수집 항목

서비스	구분	필수항목	선택항목
인증 발급 서비스	개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발급용 임시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mail, 신분증 사본	주소
	미성년자 및 만14세 미만	이름, 주민등록번호, 발급용 임시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mail, 신분증 사본 법정대리인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주소
인증서 폐지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2.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브라우저 정보(브라우저 명, 버전), OS정보

□동의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필수)

한국정보인증은 공동인증서비스의 제공시 아래와 같은 경우에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보인증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금융결제원	출국정보 조회	이름, 주민등록번호	목적 달성 후 즉시 폐기
등록대행기관	인증서 부정발급 및 부정사용 대응, 결제 및 정산	이름, 생년월일, DN, 전화번호,휴대폰번호, E-mail	목적 달성 후 즉시 폐기
국가공공기관	법령에 의한 제공의무	이름,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mail, IP	목적 달성 후 즉시 폐기

□동의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신청자: (인)